

의안번호	2213772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4. 8.
추계번호	25B5772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3억 1,000만원(연평균 6,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 기본계획(안 제6조)	250	—	—	—	—	250	50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13	13	13	13	13	60	13
합계	263	13	13	13	13	310	63

주: 1.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방법·규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경하여야 함(제1항) 1. 해양포유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2. 해양포유동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 증진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5.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안 제7조(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함(제1항) 1.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와 해양포유동물 서식지 등 보전 등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1.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 및 감소량 등 해양포유동물의 현황 2. 해양포유동물의 자연적 또는 비자연적 죽음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양포유동물의 최적지속가능수준과의 상관관계 분석 4. 해양포유동물의 어구별 혼획 현황 5.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좌초·표류에 관한 신고 현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집중적으로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해양포유동물에 대하여 정밀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5	안 제11조(해양포유동물의 혼획방지 등)	어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에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혼획저감장치의 부착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재량 규정 의무규정
6	안 제12조(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 보전 및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음(제2항) 1. 해양포유동물의 주된 서식지등이 파괴·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으로서 보전 가치가 특히 높은 서식지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포유동물 서식지등을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14조(신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포유동물 가공·보관·유통·판매업자에 대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 규정
8	안 제15조(폐업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9	안 제16조(전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전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0	안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 미대상: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6조(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 기본계획)	○	• 유사사례 참고
3	안 제7조(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	○	• 유사사례 참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4	안 제8조(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3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종합조사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11조(해양포유동물의 혼획방지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혼획저감장치의 부착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및 수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해양수산부의 혼획방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6예산</th></tr><tr><td>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개발 연구</td><td>주요 연근해어업의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한 어구·장치 연구개발 추진</td><td>300</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개발 연구	주요 연근해어업의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한 어구·장치 연구개발 추진	300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개발 연구	주요 연근해어업의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한 어구·장치 연구개발 추진	300							
6	안 제12조(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 보존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동물 특성을 감안한 서식지·이동경로·먹이활동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식지에 설치된 어장·양식장·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포유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7	안 제14조(신고)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양포유동물 가공·보관·유통·판매업자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5조(폐업 등의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해양포유동물을 가공·보관·유통·판매하는 자가 폐업 또는 전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대상 및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9	안 제16조(전업의 지원)		
10	안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범위 및 대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2억 5,000만원(연평균 5,0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 중 첫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해양수산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과제명	연도	금액
'19~'28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9	200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1~'30) 수립 및 기초조사 연구	2021	300
평 균		25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50	-	-	-	-	250	5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 운영(안 제7조)

-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에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유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
 - 위원회 정원 10명 중 민간위원 수는 7명(정원의 70%)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는 연간 6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222쪽)

[표 5]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2023~2025년

(단위: 명, 회)

	위원 (A=B+C)	공무원 (B)	민간 위원 (C)	정원대비 민간위원 비율 (C/A)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연평균 (3년)
					2023	2024	2025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 원회	20	4	16	80.0%	2	3	2	2.4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 위원회	15	1	14	93.3%	11	5	13	9.7
중앙수산조정위원회	23	3	20	87.0%	10	4	5	6.3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22	10	12	54.5%	6	6	6	6.0
평균	20	4.5	15.5	77.5%	7.3	4.5	6.5	6.1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6.3.

- 추계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6,000만원(연평균 1,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7	7	7	7	7	—
회의개최 횟수(B, 회)	6	6	6	6	6	—
사례금 단가(C, 백만원/명·회)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13	13	13	13	13	60

주: 1. 해양수산부 내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